

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. 10. 1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8. 21. 마포구청장(건강동행과)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6.
- 다. 상정일자 :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. 10. 17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건강동행과장

가. 제출이유

마포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치매안심센터 위·수탁 협약기간이 2023.12.31.자로 종료됨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

나. 주요내용

- (1). 위탁사무명: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
- (2)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

2) 추진필요성

- 어르신 치매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는 민간(의료기관)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

(3)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1)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

-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(교육, 홍보, 상담 등)
- 치매 조기검진 사업(선별검진, 정밀검진, 원인확진검사)
- 대상자 등록·관리 사업(인지건강 프로그램 운영, 사례관리, 공공후견인 지원 등)
- 치매 가족지원 사업(가족 프로그램 운영, 치료비 지원, 조호물품 지원 등)
- 지역자원 강화 사업(협업체 운영, 치매안심마을, 치매안심주치의 등)

(4). 위탁시설 개요

- 1) 시설현황 : 검진실, 프로그램실, 치매환자 쉼터, 가족카페, 사무실 등
- 2) 규 모 : 1,236㎡(374평)
- 3) 위 치 : 마포구 대흥로 24길50, 3층(염리종합사회복지관)

(5). 민간위탁기간: 3년 (2024.01.01. ~ 2026.12.31.)

(6)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

(7). 소요예산: 1,556,616천원

구 분	예산액(천원)	산출내역
치매안심센터 운영	1,448,000	- 센터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
치매치료관리비	103,960	- 치매 치료비 지원
치매공공후견사업	4,656	- 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심판청구 비용 등
합 계	1,556,616	

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- 본 동의안은 마포구 치매관리사업의 민간위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- 치매는 의학적 치료의 한계성뿐만 아니라 기억·언어·행동장애 등 그 증상이 장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질병임.
- 이에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에서는 시·군·구에 치매안심센터(이하 “센터”)를 설치하고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,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,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, 치매 예방·교육 및 홍보,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,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.
- 마포구는 센터를 2007년 7월20일 현 마포동행센터(대흥로122) 위치에 개소하고 ‘서울성모병원’ 과 최초로 위탁 운영하였으며, 2021년 9월 28일 염리종합사회복지관(대흥로 24길 50)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는 등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위탁 재계약하였음.
- 본 사업은 효율적인 어르신 치매관리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, 의학 분야 전문지식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치매지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위탁 운영 중인 현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.
- 또한, 2023년 7월 부서에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시한 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, 현 위탁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됨.
- 다만, 동일한 위탁기관의 반복적 계약은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의 개발 및 홍보 등 발전에 소홀하게 되는 비효율성 발생을 간과될 수 있으므로, 부서에서는 타 민간운영시설과의 비교 평가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.

- 아울러,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보건소 직영운영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으므로 이에 따른 준비와 문제점 등은 없는지 검토하고 추진계획의 설명도 필요해 보임.

[관 계 법 령]

「치매관리법」

제17조(치매안심센터의 설치)

- ① 시·군·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(이하 "치매안심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
 2. 치매환자의 등록·관리
 3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 4. 치매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 5.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
 6.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
- 6의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
- 6의3.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
- 6의4.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7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-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